2022년도

세종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(추가모집)

기업용 Q & A

2022. 6.

세종상공회의소

◈ 사업 관련

Q A 1 본 사업의 취지는?

□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

Q A 2 본 사업의 주된 내용은?

□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,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(월세)을 지원

Q A 3 지원 대상은?

□ 공고문 상 **다음 신청자격**을 **모두 충족**해야 함

< 표1 -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신청자격 요건 >

구분	내용
①기업 요건	·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(농공)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
②근로자 요건	· 입사 5년 미만 근무자이며,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☞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%** 이상은 임차료 지원 일자(4/1) 기준,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(2021. 10. 1. 이후 입사자 해당) * 단, 기숙사 이용 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,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**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※ 공고일(7/4) 이후 채용된,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, 입사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숙사로 전입 조건으로 지원 가능

③기숙사 요건	·소재지가 세종시이며,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기숙사 ex) 아파트,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단, 농공단지 등 공동주택 구하기 어려운 경우 한해 '단독주택' 허용 ※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

Q A 4 지원 한도는?

□ 기숙사 **월 임차료의 80% 이내**

○ 단, **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**

· ex)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, 월 임차료의 80%인 40만원이 아닌,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 이내 지원

○ 접수상황에 따라, 당해연도 사업 예산범위 내 지원율(80% 이내) 조정 가능

◈ 근로자 관련

Q A 1 근로자 지원대상은?

□ **입사 5년 미만 근로자**여야 하며, **해당 기숙사로 전입**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

○ 이용근로자 정원의 20%* 이상은 임차료 지원 일자(4/1) 기준,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** 반드시 포함(2021. 10. 1. 이후 입사자 해당)

* 신규근로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

** 재입사자 지원 불가

*** 공고일(7월 4일) 이후 채용된,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, 3개월 내에 해당 기숙사 전입 조건으로 지원가능

○ 이용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, 최소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

Q A 2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?

□ 신규근로자(6개월 미만) 중도 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함

○ 요건 충족자를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입소가 늦어져 공실이 길어질 경우(월 15일 이상),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 지급 불가

- 단,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근로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당월 월세비용 전액 지원

○ 이용 근로자가 변경될 경우 '근로자 변경(공실) 신고서' 상시 제출

Q A 3 신청하려는 기숙사의 이용근로자가 중간에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.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□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중간에 교체됐을 경우, '근로자 요건'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대체하고, 공실기간이 월 15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3개월분 월세비용 지원 가능

○ 신청 시, 신규 근로자를 '지원금 대상자 명부'에 기재하여 '근로자 변경 신고서'와 함께 제출
- 기존 이용하던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, '고용보험상실신고서' 제출

□ 이용근로자 중 신규근로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,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퇴사자 제외 이용근로자 해당 분기 지원 유지

* 퇴사일 기준으로 3개월내 요건 충족(보완) 시 계속 지원

※ *예시 (○○기업) : 5년 미만 입사자 4명 + 신규근로자 1명 지원*

중도퇴사자 및 인원	요건 충족 대체 여부	지원 인원	지원 내용	비고
신규근로자 1명	대체	5명	계속 지원	
신규근로자 1명	미대체	4명	해당 분기 지원	* 3개월내 요건 충족(보완) 시 계속 지원
5년 미만 입사자 1명	미대체	4명	계속지원	신규 채용자 신청 비율 20% 이상 조건 충족

※ *예시(△△기업) : 4월 16일 신규 채용자 중도퇴사*

- 7월 15일까지(**퇴사일 기준 3개월**) 요건 충족자 대체 시 계속 지원 가능
- 기한 내 요건 충족자 미대체시 사업종료

Q A 4 기숙사 이용 근로자 개인 사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는?

▢ 이사, 퇴사, 휴직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해당 기숙사의 공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**'근로자 변경(공실) 신고서'를 제출**해야 하며, 공실 발생에 따른 월 임차료는 사업주 부담

○ **단, 근로자가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세비용 전액 지원**

Q A 5 외국인 근로자와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는지?

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및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직 근로자는 **사업 신청 불가**

○ 이 외에, **사업주의 친인척 관계**인 근로자와 **고용보험 미가입** 등 고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근로자 **신청 불가**

◈ 기숙사 관련

Q A 1 기숙사 계약 주체는?

□ 사업에 참여하는 **중소기업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**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

○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포함

Q A 2 기숙사를 전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. 신청 가능 여부는?

□ 본 사업은 **임차료에 대한 월 지급방식(월세)에 대해서만 신청** 가능

○ **전세 또는 자기 소유**(사업주, 사업주친인척, 근로자 등) 건물은 **신청 불가**

Q A 3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변경된 경우는?

□ 계약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기숙사가 변경됐을 경우, **'기숙사 변경 신고서' 상시 제출**

○ 신규 기숙사에 대한 부동산 계약서류 등 증빙자료와 변경된 기숙사에 대한 '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'(붙임2) 제출

Q A 4 동일한 기숙사에 다수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.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?

□ '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'에 따라 **공동거주 시 월 임차료 산정은 '공동이용 기숙사 월임차료 총액'을 공동거주 인원으로 안분,**

산출된 금액에 대해 별도 지원율(80% 이내) 금액 내 지원

Q A 5 지원을 신청하는 기숙사에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□ 지원금 지급은 '근로자 기준'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

○ 기숙사 월임차료 총액에 대해 근로자 인원수 안분을 위해, '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'에 근로자 요건 미충족자 포함하여 거주자 전원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.

○ 모니터링 결과, **공동거주 근로자를 표기하지 않아 임차료를 허위로 산정했을 경우,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**

Q A 6 이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다수일 경우도 지원 가능한지?

□ 사업주가 임차한 기숙사가 다수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
단, **이용중인 기숙사에 대한 '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'를 각각 작성**하여 제출

○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포함

Q A 7 회사 소유의 기숙사 건물은 지원받을 수 없는지?

□ 기업 소유의 자체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

○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친인척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이용하는 경우도 지원 불가

◈ 사업신청 관련

Q A 1 지원기간이 동안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?

□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사실과 임차료 납입 증빙서류 확인 후 3개월치분 사후 지급

Q A 2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지원이 가능한지?

□ **보증금 및 공과금, 월 관리비 등**는 수혜기업이 부담해야 하므로, **지원 불가**

○ 단,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

Q A 3 반드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여야 하는지?

□ 세종시 내 산업단지,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

-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급하는 '산업단지 입주 확인서*'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이어야 함

* 1)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서 발급처 : 팩토리온(http://www.femis.go.kr)
  2) 발급절차: [온라인민원] – [증명서 발급 신청] – [증명구분 : 입주 확인서 선택]

Q A 4 세종지역에 공장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. 신청이 가능한지?

□ 세종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이 완료된 경우, 신청 가능

Q A 5 지원금 한도는 어떻게 정해 지는지?

□ 본 사업 접수 결과,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기업 선발

□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, 월 임차료의 최대 80% 이내에서 본 사업 예산에 따라, 지원기업별 지원금 한도 설정 후 업체 통보

Q A 6 신청 접수 및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?

<'22년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추진 절차>

신청 및 접수	평가 및 선정	지원금 지급	모니터링
'22 7. 4. ~ '22. 7. 15	서류검토 및 지원금액 심사	분기별(3개월 단위) 증빙서류 제출	기숙사 실태 점검 및 기업 방문
세종상공회의소, 세종시 홈페이지	세종상공회의소	기업→세종상의	세종상공회의소

□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하여, 모든 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를 통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기업 선발

- 기업별 지원한도 설정 후 공문 안내

□ 선정기업에 한해, 월세비용 청구 3개월 단위 사후 신청

〈 표 - 월세비용 청구 기간 〉

차수(분기)	지원내용	신청 기간
2분기	2022년 04월~06월 임차분	2022. 07. 28(목) ~ 2022. 08. 08(월)
3분기	2022년 07월~09월 임차분	2022. 10. 01(토) ~ 2022. 10. 10(월)
4분기	2022년 10월~12월 임차분	2022. 12. 12(월) ~ 2022. 12. 16(금)

- 이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?

구 분	제출서류	비 고
지원금 신청	①지원 대상자 명부[붙임4] 1부. ②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. ③월세 납입 증빙자료(3개월치) ④기숙사별 내·외부 사진 각 1부 ⑤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(해당 기숙사 전입) 각 1부.	
근로자 변경	①확약서 1부. ②개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. ③참여자 동의서 1부. ④고용보험 상실신고서(퇴사자 발생시) ⑤변경 대상자 주민등록등본(해당 기숙사 전입) 각 1부.	해당 근로자만
기숙사 변경	①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. ②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[붙임2] 1부.	해당 기숙사만

1) '근로자 또는 기숙사 변경(공실) 사실 발생 시' 해당 제출서류 구비 후 **상시 제출**
2)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숙사 공실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해야 함. 단, 공실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당월 지원 불가
3) 주민등록등본 발급시,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본에 한하여 인정

Q A 7 반드시 해당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는지?

□ 사업에 참여하는 지원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, 전입신고 미신청시 지원금 환수조치의 대상이 됨.

□ **전입신고 완료자만 지원대상으로 선정** 전입신고 미신청 및 중도 변경의 경우 지원요건 불충족으로 대상 제외

□ 공고일 이후 채용된,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 3개월 내에 해당 기숙사 전입 조건으로 지원 가능

□ 주민등록등본은 **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(최근 1년)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본인) 정보는 반드시 포함**하여 제출